

[ ] 등록증

[ ] 등록번호판

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자 |              | 처리기간 | 등록증: 즉 시<br>등록번호판: 14일 |
| 신청인<br>(소유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법인명)             |     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<br><br>(전화번호 : )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력수상<br>레저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번호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류                  |      | 용도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발급 사유 [ ]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 [ ]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 ]등록증, [ ]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서류           |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<br>(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| 수수료<br>등록증: 1,500원<br>등록번호판: 13,500원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br>2. 사업자등록증명<br>3. 주민등록표 초본<br>4.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2. 재발급되는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는 기존의 등록번호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. 다만, 해당 등록번호가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제3호에 따른 문자(영문) 및 숫자의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라 부여되는 새로운 등록번호로 표시됩니다.